이해상충방지정책

본 정책은 페어필드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예방 또는 감경을 통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Stewardship Code의 일환으로써 2023년 2월 20일부로 제정하여 운영합니다.

1. 기본원칙

1) 투자자의 이익을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도록 합니다.

2) 모든 투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집니다.

3)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4)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2. 이해상충의 관리 조직

페어필드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및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를 통하여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과 통제방안을 관리합니다.

3. 이해상충의 관리 프로세스

1) Deal 개시

임직원들은 이해상충발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 직속 상사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공개합니다.

위 공개는 임직원 스스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는 즉시 그리고 가능한 한 해당 임직원이 문제의 행위에 연루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보고 받은 자 또는 행위에 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 후 그 확인을 득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이해상충의 검토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평가 후 업무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며 업무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행위와 관련 중대한 의사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3) Disclosure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 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실행합니다.

4) Avoid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를 중단 조치합니다.

5) 회사와 펀드 간 거래 등

원칙적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재산은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의 재산, 일임재산과 거래가 금지되며, 자본시장법 및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등 펀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6) Monitoring

거래 종료 후 이해상충의 발생 여부 및 통제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준법감시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4. 거래주의 목록

아래에 해당하는 상품을 거래주의 목록으로 지정하며,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임직원의 자기매매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보유하게 된 경우 6개월 이상의 의무 보유기간을 부여합니다.

1)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으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증권

2)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선정된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3) 기타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거래주의 대상으로 공지한 상품

5. 거래제한 목록

아래에 해당하는 상품을 거래제한 목록으로 지정하며,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임직원의 자기매매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으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 또는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의 그 지분증권

2)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시공사로서 입찰 참여한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단, 입찰결과가 공고된 이후에는 거래주의 상품으로 지정

3) 기타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공지한 상품

6. 기타 금지행위

페어필드자산운용 및 회사의 임직원들은 이해상충과 관련한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업무관련자(업무상 거래하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금전, 물품, 상품권 등 뇌물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

2)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채권을 선행매매 하는 행위

3) 투자대상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집합투자업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대상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5) 합리적 사유 없이 펀드 및 투자자를 차별 취급하여 특정 펀드 및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

6) 현재 또는 잠재적 경쟁업체로부터 수수료, 커미션 또는 기타 호의를 받은 후 고의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7) 기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펀드의 이익을 제한하는 행위

※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한 페어필드자산운용의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 정책의 주요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경영공시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